

광주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가합57932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연우, 윤혜정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배호성

변 론 종 결 2024. 4. 30.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0,084,789.75달러 및 그중 미화 9,625,505.66달러에 대하여는 2023. 10. 27.부터 2024. 7. 8.까지 일 0.0368055%, 위 미화 10,084,789.75달러에 대하여는 202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0,084,789.75달러 및 그중 미화 9,625,505.66달러에 대하여는

2023. 10.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일 0.036805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10,084,789.75달러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미국에 소재한 은행인 원고는 2022. 4. 11. C(이하 ‘C회사’이라 한다)에 미화 10,000,000달러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회사에 미화 10,000,000달러를 지급하였는데, 위 대여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1]과 같다. 한편 C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여계약에 따라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을 발행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의 주요 내용은 [별지2]와 같다(이하 위
대여계약의 내용과 위 약속어음의 내용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2. 4. 11.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C회사의 대여금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3]과 같다.

다. 원고는 2023. 4. 21. C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의 변제기한을 2023. 6. 30.로
연장하였으나 C회사는 위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만 변제하였고, 2023. 10.
26. 기준 대여금 원금 미화 9,625,505.66달러와 미지급 이자 미화 459,284.09달러의 채무가 남아
있다.

라.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는 [별지3] 기재와 같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민사소송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CHAPTER 5. Interest and Costs [685.010 - 685.110]

685.010.

(a) (1)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interest accrues at the rate of 10 percent
per annum on the principal amount of a money judgment remaining unsatisfied((2)항1)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자는 미이행된 판결 원금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비율로 발생한다).

(2) (A) For judgments entered on or after January 1, 2023, or where an application for renewal of judgment is filed on or after January 1, 2023, interest accrues at the rate of 5 percent per annum on the principal amount of a money judgment remaining unsatisfied in the following cases:

(i) The principal amount of a money judgment of under two hundred thousand dollars (\$200,000) remaining unsatisfied against a debtor for a claim related to medical expenses.

(ii) The principal amount of a money judgment of under fifty thousand dollars (\$50,000) remaining unsatisfied against a debtor for a claim related to personal debt.

685.020.

(a) Except as provided in subdivision (b), interest commences to accrue on a money judgment on the date of entry of the judgment((b)항2)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금에 대한 이자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

(b) Unless the judgment otherwise provides, if a money judgment is payable in installments, interest commences to accrue as to each installment on the date the installment becomes due.

마.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는 [별지2] 기재와 같이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그 기준이 되는 D 우대금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연 8.5%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C회사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0. 26. 기준 대여원리금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증계약에 관한 준거법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이라 하더라도 구 국제사법(2016. 1. 19. 법률 제137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3) 국제적 강행규정인 민법 제428조의3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보증계약은 C회사의 대출금채무와 관련된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에 해당함에도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는바 민법 제428조의3 제2항에 따라 무효이다.

2) C회사는 멕시코에 소재한 공장을 매각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는데, 원고 소속 E 본부장이 다른 은행 관계자에게 ‘C회사를 F로 넘길 예정’이라는 점을 발설하여 C회사의 신용도가 크게 경색되었고, 이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 피고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 전부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준거법의 결정

이 사건은 미국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으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 제13조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을 준거법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관한 준거법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C회사의 대여금 채무는 2023. 10. 26. 기준 원금 미화 9,625,505.66달러와 이자 미화 459,284.09달러가 남아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통해 C회사의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연체금리는 [별지2] 기재와 같이 D 우대금리에서 연 0.25퍼센트를 공제한 후 연체가산이율 연 5%를 가산한 13.25%(= 8.5% - 0.25% + 5%)를 360으로 나눈 0.0368055%(= 13.25% ÷ 360)를 미상환일수에 곱한 비율이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제685.010.조 및 제685.020.조는 금전판결이 내려진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0. 26. 기준 대여원리금 합계 미화 10,084,789.75달러(= 원금 미화 9,625,505.66달러 + 이자 미화 459,284.09달러) 및 그중 대여금 원금 미화 9,625,505.66달러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3. 10.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전날인 2024. 7. 8.까지는 약정 이율인 일 0.0368055%, 위 대여원리금 합계 미화 10,084,789.75달러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정한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대여금 원금 미화 9,625,505.66달러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위 대여원리금 합계 미화 10,084,789.75달러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서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와 중복되고, 그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중복하여 인정할 근거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증채무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주장

살피건대, 구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국제사법 제7조의 취지 및 민법 제428조의3의 입법 경과, 보증계약에 관한 국가별 규율, 당사자들의 의사,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 등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민법 제428조의3이 구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구 국제사법 제7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적용 배제가 허용되지 않고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이른바 보편적 또는 국제적 강행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바, 적어도 그 입법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그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법체계와 사회질서 및 거래안전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법 규정 자체에서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거나 혹은 자신의 국제적 또는 영토적 적용 범위를 스스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당초 2008. 3. 21. 제정된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6조는 호의로 이루어지는 근보증계약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호의로 이루어지는 근보증계약에 더하여 민법이 적용되는 근보증계약에 대해서도 위 특별법과 유사한 정도로 규율하기 위해서 2015. 2. 3. 법률 개정으로 민법 제428조의3이 신설된 것이다. 이처럼 근보증계약의 경우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규율 자체가 입법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규율이 보편적 또는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로 대한민국 민법이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율을 받아들여 민법 제428조의3을 신설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근보증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마다 규율의 내용이나 정도,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관행이 다를 수 있고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구두에 의한 계약의 체결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 계약체결의 방식의 측면에 있어서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규율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은 규율이 보편적 또는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자리잡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당시 이를 계약의 내용에 편입하거나 대한민국의 민법 중 강행규정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지도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위 규정이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채권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을 준거법으로 명시적으로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보증의 범위, 성격, 보증인의 책임, 권리 및 항변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약정하였는데, 국제적 계약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계약당사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당사자 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함이 상당하고, 달리 민법 제428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사회질서 및 거래안전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신의성실(Good Faith)의 원칙 위반 주장

가)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 소속 직원이 다른 은행 관계자에게 ‘C회사를 F로 넘길 예정’이라는 점을 발설하였고 이로 인하여 C회사의 신용도가 크게 경색되었다는 이유로 신의성실(Good Faith)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보증계약의 효력이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주장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 사건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므로 그 증명의 정도는 미국 민사소송에서 요증사실의 입증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이른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증명에 의한다 할 것이다4) .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소속 직원이 다른 은행 관계자에게 ‘C회사를 F로 넘길 예정’이라는 점을 발설하였다는 사실의 존재가 그 부존재보다 더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신의성실(Good Faith) 원칙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채권자인 원고의 직원이 채무자인 C회사의 민감한 사실을 다른 금융기관에 유포하여 C회사의 신용도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 직원의 행위는 단순히 C회사의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자신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매우 이례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스스로 채권 회수를 방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원고 소속 E 본부장은 다른 은행 관계자에게 ‘C회사를 F로 넘길 예정’이라는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2023. 7. 25. 원고에게 E 본부장이 위와 같은 사실을

발설하였음을 전제로 항의하였는데, 만일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존재하였다면 이는 고객의 항의가 있었음을 넘어 E 본부장이 원고의 채권 회수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E 본부장을 징계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당함에도, 원고가 E 본부장을 징계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E 본부장은 여전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피고가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는, 피고가 원고에게 항의하는 내용과 피고 직원이 피고 측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항의한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로 피고 내부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에 불과하고, 피고는 E 본부장으로부터 ‘C회사를 F로 넘길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다른 은행 관계자의 진술 등 위와 같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호, 판사 장유나, 판사 김대욱

별지

- 1) 원금이 미화 200,000달러 미만인 판결에 관한 내용
- 2) 분할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내용
- 3) 피고는 현행 국제사법 제20조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2022. 7. 5.부터 시행된 현행 국제사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관한 준거법으로 민법 제428조의3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현행 국제사법 제20조와 구국제사법 제7조는 그 규정 내용이 거의 동일한바, 피고의 위 주장을 구 국제사법 제7조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 4)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 참조